

2020년도 제10회 주거복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10회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장

(사) 한국주거학회 장

- 자격종목 : 국가공인 민간자격 주거복지사
- 등록번호 : 2014-1368
- 공인번호 : 국토교통부 제2018-1호

1. 일반사항

※ 코로나19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일시 및 시험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임.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020.10.19.(월) 09:00 ~ 2020.11.06.(금) 23:59	2020.12.19.(토)	2021.01.04.(월) 15:00	2021.01.15.(금) 15:00

※ 대체·면제 인정 과목 심의 접수기간 : 9.28.(월) 10:30 ~ 10.12.(월) 17:00

나. 시험 시행지역 및 장소

- 서울, 부산, 대구, 전북(전주), 충북(청주)

※ 시험장소는 접수 후 최종 확정하여 재안내 예정임.

다. 시험시행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 홈페이지: www.housingwp.or.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우성캐릭터199 313호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우:06295)

○ 문의처 : 02-565-5331, chwp@khousing.or.kr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항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2과목	과목당 50문항 (총 100문항)	2점 / 1문제	과목당 100점	객관식 5지선다

나. 시험시간

교시	시험과목	입실 완료시간	시험시간
1교시	주거복지총론 (50문항)	10:00	10:20 ~ 11:20 (60분)
휴식시간 11:20~11:50 (30분)			
2교시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50문항)	11:50	12:00 ~ 13:00 (60분)

※ 응시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실 완료시간부터 시험시간 동안에는 화장실 등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휴식시간 : 1교시 종료 후 답안지 회수 및 확인 후 퇴실 가능함.

3. 시험과목

시험 과목	주요항목
주거 복지 총론	○ 주거의 이해(주택과 주거의 개념, 주거 관련 전문용어, 주거계획 전반에 관한 지식 등) ○ 주거와 커뮤니티(커뮤니티의 이해, 주민 상담·교육,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등) ○ 주거복지의 이해(주거복지의 개념과 대상, 주거복지 평가, 주거복지 관련 용어와 개념의 이해, 주거복지 업무의 이해, 주거복지 서비스·자원과 전달체계 등) ○ 주거복지 정책·사업·제도·금융(주거·주거복지 관련 법, 임대주택 관련 사항,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정책·제도 등)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주택설비·구조 관련 개념, 노후 주택평가 및 개보수 기초지식, 주택성능 및 안전, 도면 판독, 공사비 등) ○ 노인·장애인의 특성과 공간디자인(노인·장애인 관련 법, 노인·장애인 특성, 노인·장애인 배려공간 디자인 및 개선 지식, 노인·장애인 주거 시설 등) ○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불량주거 개선(저소득층 등 주거빈곤계층의 특성, 불량주거의 이해, 불량주거 현황과 개선 지식, 불량주거 관련 법 등) ○ 에너지 환경개선(실내환경지식(빛, 열, 공기, 음), 에너지효율화 관련 기초 지식 및 기술 등)
주거 복지 실무와 적용	○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과학적 조사방법과 자료수집, 주거복지 DB 활용 능력, 조사자료의 처리·분석·해석, 주거복지 및 주거실태조사 기획·평가, 보고서 작성 등)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관리실무(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상담 및 주거급여 기초지식의 실무적용, 주거복지 상담 기술, 주거복지 사례의 DB관리 기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 ○ 주거관리 적용실무(주거 운영관리와 행정 실무, 에너지·주거환경 유지 관리, 임대차 계약, 입주자 조사·관리 등) ○ 주거복지현장 적용기술(주거복지사의 소양과 윤리, 민원 대응 및 해결 기술,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무 등)

※ 시험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 공고일 기준(2020년 9월 28일)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4.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함.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사업단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심사 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추가 요청한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세부기준은 다음 표 <응시자격 참고사항>과 같음.

- 1)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참고사항>

졸업자 등	“졸업자 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

졸업 예정 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관련 직무 분야	1. “관련직무분야”란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 조사, 관리, 평가,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하다.

나.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가능함.

해당 이수 과목	해당 이수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과목 명칭
	필수과목 (5과목)	주거복지개론, 주택과 커뮤니티,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5과목이상)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취약계층케어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거복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함.

6.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 접수 안내

가. 대체·면제 인정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아래 접수기간 내에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 요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야 함.

-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 과목 면제를 위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함.
- 2) 대학에서 대체과목을 이수한 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함.

나. 접수기간 : 2020.9.28.(월) 10:30 ~ 10.12.(월) 17:00

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housingwp.or.kr)에서 심의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주거복지 현장실습 지원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함(www.kowell.or.kr).

라. 제출서류

- 1)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 요청서
- 2)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2020.10.19.(월) 09:00 ~ 11.6.(금) 23:59 (19일 간)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housingwp.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① 반명함판 사진(3cm×4cm)

②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응시자격 해당 서류

※ 원서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3cm×4cm, 해상도 200dpi 이상)을 JPG 파일형태로 첨부

다. 응시료 납부

○ 응시료 : 50,000원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카드 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접수기간 내 응시료 미납 시 접수가 되지 않음)

라. 응시료 환불

○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함.

- ① 접수기간 중이거나 검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100% 환불
- ② 시험일 5일 전까지(~ 12.14)는 50% 환불
- ③ 시험일 4일 전부터는 환불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접수 변경 · 취소 방법

- 변경 :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응시원서 승인 처리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변경 가능
- 취소 : 응시원서 승인 처리 전까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취소 가능, 승인 처리 후에는 이메일로 접수 취소 요청(chwp@khousing.or.kr)

바. 수험표 출력

- 홈페이지(www.housingwp.or.kr)에서 출력
-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응시원서를 승인 처리한 후 출력 가능하며, 문자 안내 예정

8.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21. 1. 4.(월) 15:00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housingwp.or.kr)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 ※ 합격예정자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추가 요청한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1. 1. 15.(금) 15:00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housingwp.or.kr)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다. 자격증 발급

-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발급비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www.housingwp.or.kr)를 통해서 공지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유의사항

- 1) 코로나19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일시 및 시험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하겠습니다.
- 2)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누락 및 연락불능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3)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응시자는 시험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5) 시험 당일 입실시간은 9시 2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손 소독 및 발열 체크 등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입실이 불가하오니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실물만 허용
- 7)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본부에서 또는 안내위원회에 본인 확인 후 수험번호 및 시험실 확인이 가능합니다(재교부 불필요).
- 8)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9)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당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0) 화장실 사용은 휴식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각 교시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실 시 시험 중도포기로 간주).
- 11) 시험실에서는 휴대전화기, 전자사전, 스마트시계 등의 전자기기를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벨소리 및 진동 울림 포함).
- ※ 휴대전화기는 전원 종료하여 입실 시 제출함(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 모드 허용안함).
- 12)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형의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형 휴대전화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 착용을 일절 금함.
- 13) 본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14)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고, 동시에 감독위원이 답안지 매수 확인을 마친 후 퇴실을 안내하면 그 때부터 퇴실합니다.
- 16) 시험 후 시험문제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시험결과 등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 민원접수 후 기관 방문하여 본인의 답안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과목별 점수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17) 주차권은 제공하지 않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 1) 답안지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지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정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지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안지에는 일체의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 문항 채점은 전산채점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지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전산채점 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 답안지에 성명과 생년월일, 수험번호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합니다.
- 6) 감독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주거복지사 자격시험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응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ousingwp.or.kr)를 참고 또는 자격검정사업단(02-565-5331/chwp@khousing.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험 당일 안정적인 자격시험 진행을 위해 응시자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 제한 및 철회 대상자

-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로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시험일 기준 2주 이내 해외 또는 국내 집단발생지 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응시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는 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자격검정사업단(02-565-5331)에 사전 신고해주시고, 응시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검사 확인증 등 진단검사 사실 증빙 시 100% 환불).
- 확진환자, 응시 제한 대상자 및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 국가에서 입국한 응시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자격검정사업단에 응시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 제한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입실부터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 확인 시간에는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임의 탈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시험위원의 지시에 불응 시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실)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안내 등에 협조 바랍니다.
 - 발열체크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시험실에 입실할 때마다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시험 중 증상발현 응시자는 응시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 연기·취소 등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응시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단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